

창의력개발연구소 규정(4-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창의력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지식활용능력과 정보창출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대학인재양성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의력에 관련한 각종 자료수집(Data base구축)
2. 연구논문 발표 및 연구활동
3. 신입생 및 예비 졸업생을 위한 창의력 교육
4. 창의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창의력 관련 강좌 개설 및 운영
6. 각종 행사(아이디어 컨테스트, 창의력 경시대회 등) 운영
7.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사업(창의성 및 영재교육, 창의력 캠프 등)
8.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연구소에는 연구부 그리고 기획부를 둔다.

제5조(임원 및 임기) ① 연구소에 소장 1인, 총무 및 각 부에는 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무는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업무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원

제5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위촉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박사과정 중이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학교 지원,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제10조(운영세칙)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시행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